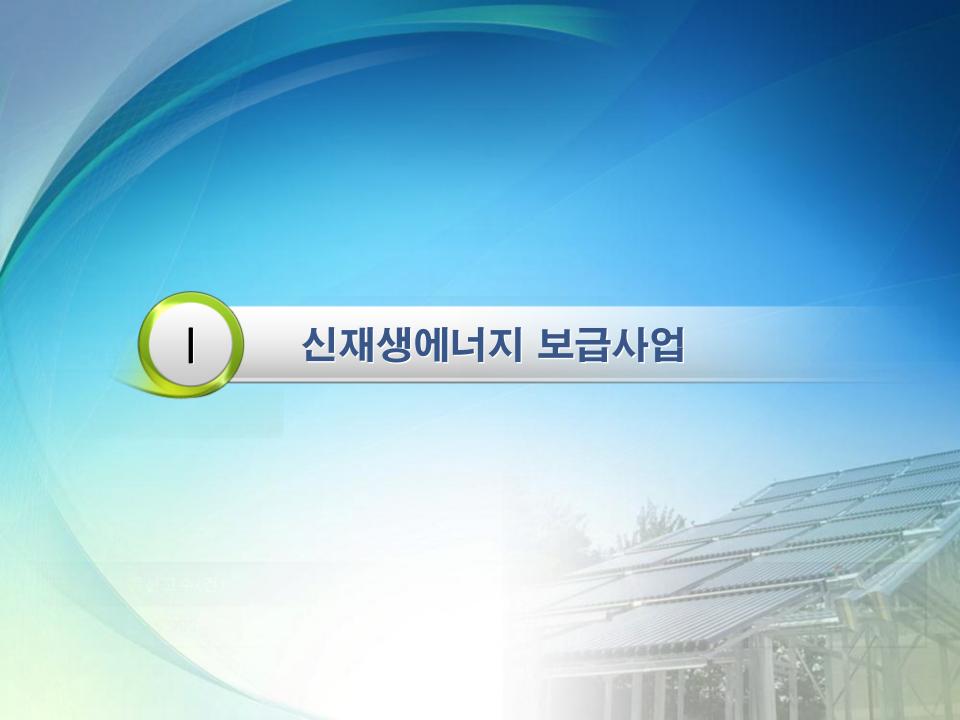




# 목차

- l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I]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 신규 추진사업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사업개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 지 원 분 야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비고
태양광	고정식/BIPV/추적식	3kW 이하/호(세대)	계통연계기준
태양열	평판형/단일진공관형/이중진공관형	30㎡이하/호(세대)	-
지 열	수직밀폐형	17.5kW 이하/호(세대)	-
연료전지	연료전지	1kW 이하/호(세대)	계통연계기준

주) 소형풍력은 보급 및 시공기준 등을 보완 후 '11년 하반기 지원

### 추 진 실 적

구 분	′04	'05	'06	′07	′08	′09	′ <b>10</b> ¹)	합 계
지원금액 (백만원)	6,300	15,764	48,920	50,456	60,572	93,990	87,426	363,428

주1) ' 10년 실적은 승인사업 기준

# 일반보급사업

####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사업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양열, 지열, 바이오	소요설비의 50% 이내		
일반보급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보급설비로써 자가용 설비	태양광, 풍력, 소수력	소요설비의 50% 이내		
	71710 2-1	폐기물 이용설비	소요설비의 30%이내		
시범보급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 (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써 자가용 설비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추 진 실 적

구 분	'93~'0 <b>4</b>	′05	′06	′07	′08	′09	′10 ¹)	합 계
지원금액 (백만원)	15,215	21,868	27,784	37,905	38,269	13,930	13,992	168,963

주1) ' 10년 실적은 슝인사업 기준

# 지방보급사업

### 사업개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 지 원 내 용

사업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시설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전 분야 50% 이내 지원

### 추 진 실 적

구 분	~'04	'05	'06	′07	'08	<b>'09</b>	'10	계
지원금액 (백만원)	117,522	32,033	38,000	38,652	178,652	71,766	70,000	546,625
사업수 (개)	219	80	96	64	410	352	279	1,500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

#### 사업개요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5%(지자체 7%)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현행] 총건축비 5%이상 → [변경] 예상에너지사용량 10%이상 [ '11.4.13 시행]

[현행] 건축연면적 3,000m² → (변경) 건축연면적 1,000m² 이상('12.1.1 시행)

#### 추 진 실 적

구분	설치계획	총건축공사비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12	(개소)	(A)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집광채광	폐기물	합계(B)	(B/A)
2004	32	227,140	5,365	9,583	1,222	0	ı	16,170	7.12
2005	115	911,700	14,188	35,937	3,192	376	ı	53,693	5.89
2006	123	1,260,114	24,425	40,629	1,623	1,125	ı	67,802	5.38
2007	107	1,062,661	32,003	20,598	1,955	758	-	55,314	5.21
2008	146	1,159,205	39,135	22,658	1,777	694	330	64,594	5.57
2009	391	4,197,731	138,230	84,969	7,283	2,148	-	232,630	5.54
2010	351	3,819,734	134,156	89,471	6,589	1,251	-	231,467	6.06
합계	1,265	12,638,285	387,502	303,845	23,641	6,352	330	721,670	5.71

# 발전차액지원제도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
- 정부는 신재생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일반전력의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발전사업자에게 일정기간(15~20년)동안 지원
- ♥ 2002년 시행, 2010년도까지 총1,694개 발전사업자에 7,720억원 지원

#### 추 진 실 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발전량 (MWh)	159,942	269,771	309,856	390,171	489,936	854,786	1,185,370	1,502,991	2,427,937	7,590,762
금 액 (백만원)	3,370	5,589	5,037	7,548	9,962	26,612	119,465	262,652	331,800	772,034
발전소수	28	8	5	23	57	142	754	291	386	1,694
발전용량 (kW)	50,703	18,618	47,140	107,618	20,007	102,183	276,934	229,619	102,036	954,858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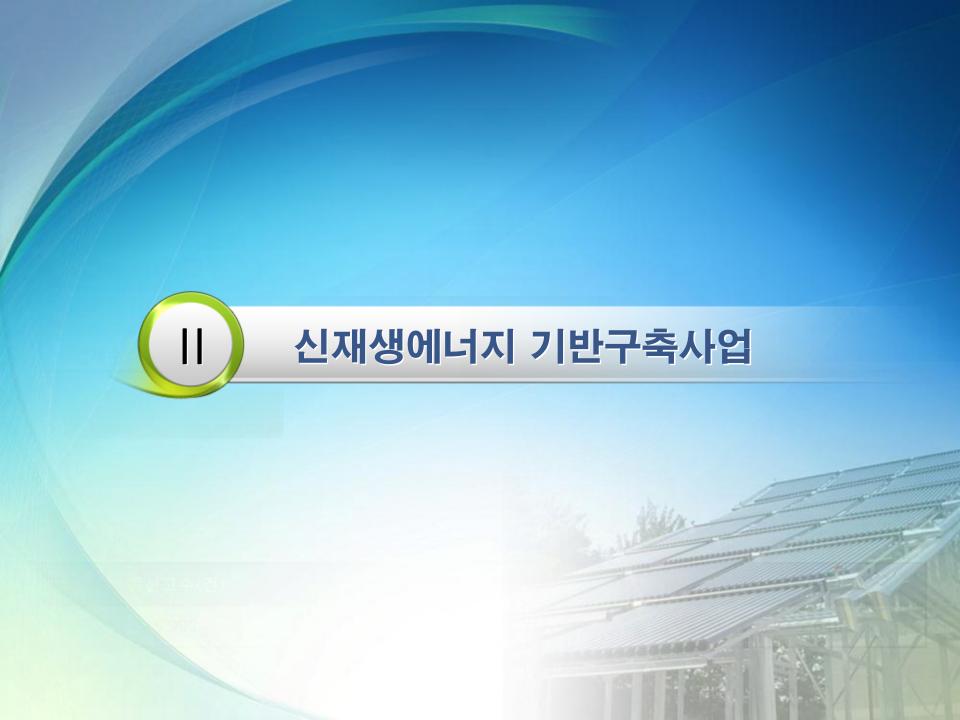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일정규모이상 대형발전사(1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할당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공급인증서(REC)로 공단이 인증
  - 공급의무자 및 소규모발전사업자 모두 대상
- 자체적으로 의무할당랑만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에서 해당랑만큼 조달
  - 공급의무자는 거래시장 등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매입
- 제도시행일: 2012년 1월 1일

#### 'RPS 시범사업

'12년 RPS 본격 시행을 대비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태양광분야에 대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

- 09년 11년 기간중 총 101.3MW규모 (자체 51.5MW, 인증서구매 : 49.8MW)
- 2011년 추진계획
  - 4월 공고하여 신청 및 선정을 완료
  - 49.3MW규모 (자체 29.5MW, 인증서구매: 19.8MW)



#### 사업개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서 발급현황

분 야	품 목		인증제품(모델)							
포 아	· · · · · · · · · · · · · · · · · · ·	'04	'05	′06	'07	'08	'09	'10	'11	계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2	4	3	3	-	4	3	-	19
EllOFO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	2	4	5	1	4	8	-	24
태양열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1	1	-	-	-	1	-	3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	-	-	-	-	-	1	-	1
	계통연계형 인버터	-	2	13	9	9	9	16	1	59
태양광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	-	-	6	87	278	198	19	588
	박막 태양전지 모듈	-	-	-	-	-	17	7	1	25
풍력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	-	1	-	-	1	-	2
	물-물 열펌프 유니트	-	-	-	1	10	49	32	3	95
지열	물-공기 열펌프 유니트	-	-	-	-	1	10	-	-	11
	물-공기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							1	-	1
연료전지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	-	-	1	1	3	2	7
기타	기타 축전지		-	-	-	-	1	-	-	1
	계	2	10	21	25	110	373	271	26	836

#### 사업개요

신재생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신재생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조건

- ①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 태양광발전 시설 제외
- ②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③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자	~ ~ ~ ~ ~ ~ ~ ~ ~ ~ ~ ~ ~ ~ ~ ~ ~ ~ ~		업자당 도액 대출기간		지원비율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3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90%이내 (대기업 50%이내)
운 :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307001-117

# 세제지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공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투자시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1년12월말까지 일몰제)

#### 대 상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4)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되는 생산 및 이용기자재 물품의 수입 · 통관시 해당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관세 경감율

관세를 경감하는 해당 물품 관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11년 12월말까지 일몰제)

# 전문기업 / 설치확인

#### 전 문 기 업 제 도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보급의 효율성과 경제성 및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전문기업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업체수	59	630	993	1,125	2,572	1,434	6,813

### 설치확인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보급된 설비에 대해 설치확인을 실시하여 설비의 품질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추 진 실 적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일반보급	192	258	208	234	154	1,046
그린홈100만호	2,387	3,046	3,752	6,927	8,372	24,484
지방보급	32	92	83	476	566	1,249
공공의무화	15	57	124	136	204	536
기타 <sup>1)</sup>	25	24	78	33	11	1,200
계	2,651	3,477	4,45	7,806	9,307	27,486

주1) 기타: 계획보급, 시범보급, 자금융자 등

# 사후관리 / 통합AS콜센터

### 사후관리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가동현황 파악, 고장원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

#### 전문기업 현황

구 분	'05년	'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업체수	59	630	993	1,125	2,572	1,434	6,813

### 등합AS콜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확산에 따른 A/S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불만해소 및 대국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보급정책을 위한 기반구축

#### 추 진 실 적

총신고수(건)	A/S완료	A/S진행	기타 <sup>1)</sup>
5,982	4,119	215	1,648

소비자 불만신고 접수 · 상담 · 처리( '07.7 ~ '10.12, 5,982건)

주1) 기타 :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제도관련 상담 등



# 건출물인증

#### 사업개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1.4.13 시행)

#### 인 중 절 차

구 분	신청인	인증기관	운영기관	지경부,국토부	
예 비	신청서 제출 =	<ul><li>신청서 접수</li><li>산</li><li>신청서 평가</li></ul>			
· 본 인		<ul><li>↓</li><li>현장확인 (본인증시)</li><li>↓</li></ul>			
u қ	인증서 취득	<b>*</b>	<ul><li>⇒ 평가보고서 검토</li><li>⇒ 인증결과 보고</li></ul>	⇒ 인증현황 확인	

- 예비인증 : 신청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 본인증 : 신청 건축물의 완궁 후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궁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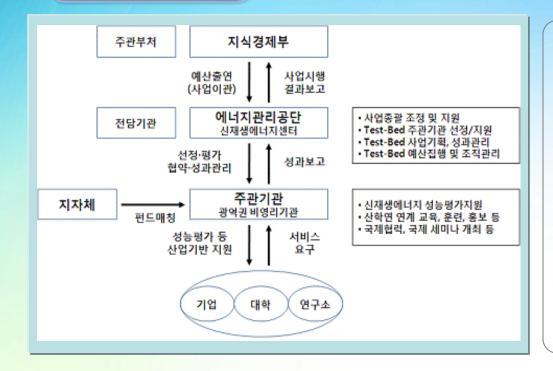
# Test-bed 구축

####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수축 촉진을 위한 부품, 소재, 장비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 최적의 권역을 선정하여 Test-bed 구축

- 총사업비 480억 : 200억(11년) -> 160억(12년) -> 120억(13년)

#### 사 업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사업총괄)

- 전담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기획, 평가, 관리 및 조정]

- 주관기관 : 광역권 비영리기관 (성능평가 및 기술지원 등)

# 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어븨 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타당성 조사사업 추진

- 사업기간: 11년~14년/ 총사업비: 400억원 (11년: 90억원)

### '11년도 사업규모

구 분	예산 (억원)	사 업 내 용	전담기관
해외진출 기반조성	60	.해외 신재생에너지시장 조사, 프로젝트 발굴(10)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12) .해외 전시회참가 로드쇼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15)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가 해외 연수.교육(10) .신재생에너지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10)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3)	신재생센터 " " " 신재생협회
해외타당성 조사사업	30	. 업체의 해외프로젝트 feasibility study 지원	신재생협회
합 계	90		

